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개정 전** | **개정안** | **비 고** |
| **제1장 총 칙** |  |
| **제2조** **(목적)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**41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| **제2조** **(목적)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**41. 자동차의 각종부속품 제조 및 판매42. 차량용 조명장치, 램프 제조 및 판매43. 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업44. 전기장비 제조업45. 각종 전기용품 및 부속품의 판매46. 공학 및 기술연구 개발업47. 신재생에너지 생산업48. 신재생에너지 발전업49. 산업설비공사업50. 기계설비공사업51.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업52. 환경설비 제조, 판매 및 수출입업53.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54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| **사업의 목적 추가** |
| 부칙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단, 제3조 본점 및 지점 소재지 변경은 본점 이전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 | 부칙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단, 제3조 본점 및 지점 소재지 변경은 본점 이전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 | **시행일 변경** |